

#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



##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

매년 동절기(12월~2월)에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갈탄연료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, 갈탄, 숯탄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하게 됨



## [유해·위험성 및 재해사례]

### ■일산화탄소 유해·위험성

▶ 일산화탄소 적정농도는 30ppm 미만으로, 산소보다 우선적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온몸에 산소운반을 방해함으로써 체내 산소부족 상황(두통, 정신혼란, 현기증, 의식불명)을 일으킴





<저수조 콘크리트 양생>

< 숯탄 난로>

특히, 1,000ppm 이상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(호흡)할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(※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체로 1,000ppm 이상임)

## ■ 양생작업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

- ▶ (22년) 1월 경기 화성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 내부 양생작업 시 <u>숙탄</u> 난로를 피워 재해발생(1명 사망, 1명 부상)
- ▶ (21년) 11월 대구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에서 숯탄 난로를 피워 재해발생(4명 부상)
- (21년) 1월 경기 양주 소재 근린생활시설 바닥 타설 후 야자단 난로를 피워 재해발생(1명 부상)
- ▶ (19년) 12월 서울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에서 <u>숙탄</u> 난로의 탄을 교체하는 작업에서 재해 발생(1명 부상)

## [ 질식위험공간 안전작업절차 ]

#### ■ 반드시 필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!

- 1) 갈탄, 숯탄 등 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
- 2) 관계자 외 무단출입금지(경고표지 부착)
- 3) 출입 전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<적정공기> 산소 18-23.5%, 일산화탄소 30ppm미만, 이산화탄소 1.5% 미만
- 4) 출입 전,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 지속적으로 환기하거나, 송기마스크(공기호흡기) 착용
- 5)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

### ■ 질식 위험공간 내 환기 절차!

송풍기에 자바라를 붙여서 입구에서 1m 이상 밀어 넣고

(가급적 작업 위치까지 밀어 넣는 것이 효과적임)





작업자가 들어가기 전, 15분 이상 공기를 불어 놓고

> (단. 환기시간은 질식위험공간의 체적, 구조, 유해 가스 발생량, 환기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3 작업자가 들어간 후, 계속 송풍기를 틀어 놓을 것!

> (단,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라 필요 송풍기 대수가 증가될 수 있음)





※ 양면이 개방된 배관, 캠크와 같은 텔레공간은 이렇게 한기하세요

#### ■ 질식재해에방 One-Call 서비스 제공

▶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시 전문가 현장을 방문하여 ①산소가스농도축정, ②안전교육, ③질식 재해예방장비대여 서비스를 무상지원하고 있으니 ☎1644-8595로 신청바랍니다.



콘크리트 양생작업공간 내부로 들어가거나 작업 시 반드시 <mark>필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 일산화단소 중독에 의한 질식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</mark>